

1. 개정이유

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,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‘사업자등록증’에서 ‘사업자등록증명’으로 변경하고,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소방시설업 등록신청, 등록사항변경신고,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하게 규정(안 제2조제3항, 제6조제2항, 제7조제3항,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7호 서식, 별지 제7호의3 서식, 별지 제8호 서식, 별지 제9호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따라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따른”을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)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)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며,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

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,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지위승계인이 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지위승계인이 외국인”을 “외국인”으로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)

별지 제1호서식 제2호 중 “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합니다.”를 “하며,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”로 하며, 같은 서식 “신고인”을 “신청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제4호 중 “취소된 경우, 휴업하거나 폐업한”을 “취소된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서식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에 따라 휴업·폐업의 경우에는 이 수첩을 협회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별지 제7호서식 제1호 중 “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)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사업자등록증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기호(*) 중 “신청인”을 “신고인”으로, 같은 기호(*) 중 “합니

다.”를 “하며,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의3서식 중 “신청인”을 “신고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제2호 중 “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합니다.”를 “하며,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”로 하며, 같은 서식 뒤쪽 “신청인”을 “신고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제2호 중 “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기호(*) 중 “신청인”을 “신고인”으로, 같은 기호(*) 중 “합니다.”를 “하며,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“신청인”을 “신고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) ① · ② (생략) ③ 제1항에 <u>따라</u>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<u>따른</u>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<u>한다</u> .	제2조(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며,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.</u>
1. (생략) 2. <u>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</u>	1. (현행과 같음) 2. <u>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)</u>
3. · 4. (생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<u>따라</u>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	제6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

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3. 4. (생략)

③ ~ ⑦ (생략)

제7조(지위승계 신고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----- 하며,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)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위승계 신고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,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.

1.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(<u>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</u>) 2. <u>사업자등록증(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</u> 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<u>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</u>) 4. (생략) ④ ~ ⑦ (생략)	1. -----<u>법인</u>----- <u>인</u>----- ----- 2. <u>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)</u> 3. ----- ----- --<u>외국인</u>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